

국가장학금 운영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국가장학금 제도(Ⅰ 유형 및 Ⅱ 유형)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2.6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) 본교 장학금 지급지침 제 2조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및 부수되는 기타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8.2.6.>

제4조(자격) 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18.2.6.>

1.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기본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
2.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조회 결과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소득분위를 충족하는 자
3.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취득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(C경고제 포함)
4.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잔여 예산이 발생한 경우 소득초과자(9, 10분위)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본교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8.2.6.>

제5조(수혜기간) 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장학금은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로, 수혜기간은 신청한 해당 학기로 한다.

②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기에만 수혜할 수 있다.

제6조(장학금액 및 지급 기본방침) ①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보다 우선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장학금액은 본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국가 장학금 액 범위 내에서 본교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소득분위별 하후상박 형으로 차등 지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최대한 준용하여 운영하되, 잔여 예산이 발생한 경우는 소득분위별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8.2.6.>

제7조(중복수혜)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. 단, 등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외 장학금(근로, 생활비, 연수 지원 등)에 대하여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가 가능하다.<개정 2018.2.6.>

제8조(지급방법) ①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사전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신입생, 편입생, 복학생, 재입학생 등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대하여 사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장학금 반환) 국가장학금의 반환은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 단, 교내장학금은 교내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8.2.6.>

제10조(기타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 및 본교 장학금 지급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지침의 개폐) 이 지침의 개정 및 폐지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지침 제4조, 제6조는 2015년 9월 1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